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20261105092815928 / 2013**** /

목 차

Ⅰ. 마약류 의약품 DUR 시스템 확인 의무화 제도 … 1

Ⅱ. DUR 일반 사항 4

Ⅲ. DUR 시스템 사용 방법 6

Ⅳ. DUR 처리 절차 8

20261105092816184 / 2013**** /

Ⅰ 마약류 의약품 DUR 시스템 확인 의무화 제도

Q1.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란 무엇인가요?

○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기 전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의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처방·직접 조제 시 환자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 제공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 마약류 DUR 확인 제도 근거 >

「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②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 및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이하 "마약"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Q2.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 기존에도 의약품 처방·직접 조제 과정에서 성분중복, 병용금기 등 약물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정보 확인이 의무였으나, DUR 시스템을 통한 확인은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의약품정보 확인 시 반드시 DU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61105092816577 / 2013**** /

Q3. 마약류 의약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Q4. 마약류 경구제, 주사제, 패취제 등 모든 제형이 포함인가요?

○ 네. 제형과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대상입니다.

Q5.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모든 의사, 치과의사에게 적용됩니다.

Q6. 언제부터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나요?

○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Q7.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 위반 시 제재가 있나요?

○ 「의료법」 제92조(과태료, 제3항제1호의3)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예정입니다. ('26.5월 입법예고 기준)
- 다만,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및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여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여부, 통신장애 여부 등

20261105092816794 / 2013**** /

Q8. DUR 팝업창이 발생해야 DUR 점검한 것으로 판단하나요?

○ 아니요. DUR 팝업창은 의약품 처방·직접 조제 내역이 환자가 기존 복용 중인 약과 함께 사용하면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등 DUR 점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효능군중복,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노인주의, 분할주의, 안전성 사용 중지·주의, 허가사항 주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비용효과적 함량 사용대상

○ DUR 팝업창이 발생해야 DUR 점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DUR 프로그램으로 심사평가원에 처방·직접 조제 정보를 전송하면 점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Q9. 입원 처방, 원내 처방 및 원내 조제도 점검 대상인가요?

○ 네. 입원·외래, 원내·원외, 처방·조제 모두 DUR 점검 대상이며, DUR 점검 시 '처방·조제 유형 구분'을 통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 DUR 전송정보 중 처방·조제 유형 구분 >

구분	상세유형
처방	01:입원처방, 02:외래 원외처방, 05:외래 원내처방, 06:퇴원처방, 07:성분명 외래 원외처방, 09:의약분업 예외기관 외래 원내조제, 10:외래 예약 원외처방, 23:외래예약 원내처방, 31:입원처방 및 직접 조제, 33:외래예약 원내처방 및 직접 조제, 35:외래 원내처방 및 직접 조제, 36:퇴원처방 및 직접 조제, 42:비대면 진료 외래 원외처방
조제	01:입원처방에 의한 원내 약사 조제, 02:외래 원외처방에 의한 조제, 03:약국 직접 조제, 04:약국판매약 판매, 05:외래 원내처방에 의한 원내 약사 조제, 06:퇴원처방에 의한 원내 약사 조제, 07:성분명 외래 원외처방전에 의한 조제, 42:비대면 외래 원외처방에 의한 조제

*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일부

20261105092816992 / 2013**** /

II DUR 일반 사항

Q1. DUR 대상 의약품 목록 업데이트는 언제 이뤄지나요?

○ DUR 대상 의약품 목록은 매월 업데이트되어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공개됩니다.

- 확인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DUR정보 > DUR 대상 의약품

Q2. 내가 처방한 내역이 다른 의·약사에게 노출되는 건가요?

○ 아니요. DUR 시스템은 병용금기 또는 중복 등에 해당하는 약제가 처방·조제되는 경우에만 팝업창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당 정보가 제공됩니다. 환자의 질병명, 요양기관명, 의·약사명은 제공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환자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0'으로 입력하여, 처방전 내 점검(처방전 간 점검은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4. 출생신고 전 신생아 환자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신생아는 '생년월일+3(4)000000'으로 입력하여, 처방전 내 점검(처방전 간 점검은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1105092817131 / 2013**** /

Q5. 비급여 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약품도 DUR 점검 대상인가요?

○ 네. DUR은 급여, 비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치과의사에 의해 처방·직접 조제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단, 한약 제외)

- 처방·조제 프로그램 내 일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전송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환경설정을 확인하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해킹의 위험이나 개인정보 누출 등 보안대책은 있나요?

○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 간 정보 전송 구간에는 국제 표준으로 인정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전송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DUR 서버에 저장되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며, 인가된 사용자의 접근 이력을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1105092817200 / 2013**** /

Ⅲ DUR 시스템 사용방법

Q1. DUR 시스템으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동 프로그램에 DUR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해당 SW 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약품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DUR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확인(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 >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DUR 기능 포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 커뮤니티 > 심사청구SW조회
2. **DUR시스템 전용**: 모니터링 > DUR정보 > DUR 안내 > 자료실
   (제목: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DUR전용 SW) 목록 게시 / 지속 업데이트 예정)

< DUR 프로그램 설치 확인방법 >

DUR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실행 중인 경우 PC 화면 우측 하단에 

아이콘 표시
해당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경우 DUR 실행이 종료되었거나 미설치된 것이므로 처방·조제 프로그램 종료 후 재실행하거나 청구 SW업체에 설치 여부를 확인

○ 서면 청구기관 및 수기 처방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하여 의약품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 >



1.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주소창에 http://biz.hira.or.kr 입력 후 요양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2. (화면경로) 모니터링 > DUR정보 > 서면기관 점검하기 > 처방전 점검하기
3. (DUR 점검) ① 수진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입력 > ② 약품명 조회* 후 클릭 > ③ 처방내역 확인 > ④ 점검(전송) 버튼 클릭
   * 자주 사용하는 약품은 미리 등록(최초 1회)하여 간편하게 사용

20261105092817363 / 2013**** /

Q2. DUR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중단된 경우 등 **"DUR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적, 의학·치의학·약학에 대한 전문가 대상 서적·논문, 약학 교재 등으로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약학정보원(https://health.kr),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모니터링>DUR정보) 등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4조(기타 확인방법)

Q3. DUR 전송한 내역을 확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하여 확인 및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기한*이 지난 경우는 DUR관리실(033-739-0301, 0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기한) 1. 외래처방, 처방/직접조제, 퇴원약 : 환자복용종료일 + 7일
2. 입원처방, 입원원내조제 : 환자복용종료일 + 31일

- 확인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DUR정보 > 기관별 DUR 점검 완료 현황 > 처방전 조회 및 취소
- 확인방법: 수진자의 정보 및 처방조제일 등 입력 후 조회 클릭

< 기관별 DUR 점검 현황 처방전 조회 및 취소 화면>



20261105092817779 / 2013**** /

Ⅳ DUR 처리 절차

Q1. 원내 및 원외 처방이 한 처방전내 동일 교부번호로 발행되어 '이미 조제된 처방전'이라는 팝업창이 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처방전 교부번호 발행 시 원내처방 및 원외처방을 분리하여 다른 교부번호로 처방하고, '처방·조제 유형 구분'에 따라 각각 점검되어야 합니다.

Q2. 처방일자 혹은 의사면허번호 착오로 처방전을 발급하였는데,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 조제 받았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 DUR 전송내역으로 조제여부나 조제기관명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단, 조제 DUR 점검이 완료되었다면 처방 취소 시 '이미 조제된 처방전입니다' 팝업창이 제공되며 약국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Q3. 비급여 의약품도 DUR 점검에서 금기 또는 동일성분 중복처방 팝업 제공 시 처방·직접 조제 사유를 전송해야 하나요?

○ 네. 급여·비급여 의약품 모두 DUR 점검 대상입니다. DUR 점검 결과 팝업창이 제공되었으나 부득이하게 처방·직접 조제해야 하는 경우 사유를 입력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Q4. [병원에서] DUR 점검 후 처방전을 발급하였으나, 약국의 조제가 이루어지기 전 환자가 추가 처방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동일한 처방전에 의약품이 추가 또는 용량, 일수 등 처방 수정하여 저장 시 DUR 재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 따라 처방전 발행이 완료된 후 수정되지 않는 경우, 기존 전송 내역을 취소 후 수정된 처방 내역으로 DUR 재점검해야 합니다.

20261105092817907 / 2013**** /

Q5. [병원에서] 약국의 조제가 이루어진 후 처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조제가 끝난 처방전이라도 복용 종료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병원에서 의약품 추가, 용량 또는 일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 처방전을 변경하여 저장 시 DUR 재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중복점검 결과 제공 가능)

- 의약품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교부번호, 의사 면허번호 등의 착오 입력은 기존 전송 내역을 반드시 취소 후 DUR 재점검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 처방전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약국에 먼저 조제 내역을 취소 요청하고 이후 병원에서 해당 처방전을 선택하여 취소하면 DUR 전송내역도 정상 취소됩니다. (이미 조제한 경우 취소 불가)

기타 문의사항

○ (제도 관련) DUR관리부(033-739-1703, 0301)

○ (DUR 시스템 관련) DUR정보부(033-739-0302)

20261105092818005 / 2013**** /